

“예상 못한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담”

인천지법, “시공사에 귀책사유 없다” 판결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공기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인천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근배 부장판사)는 최근 시공 중 공법 및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연장된 공기에 대해 발주자인 I시청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A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시공 중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상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발주자와 감리자에 대해 공법변경 및 공기연장을 요청했다. A사는 동시에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공법과 설계를 변경하고 증액된 공사금액은 인정해 줬다. 그러나 공기는 명시적으로

연장해 주지 않았다. A사는 당초 계약상 완공일자를 준수하지 못했고, 발주자는 계약서상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발주자는 ‘A사가 공사를 내역입찰방식으로 수주해 입찰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뒤늦게 자재 수급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리자와 발주자가 공법변경만으로도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발주자가 공기를 적절히 연장해 주는 등 계약목적 달성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A사에 대해 공기만 준수하도록 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워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



직업의 유목민들 - 잡노마드 족

현대인의 직업 의식을 논할 때 ‘잡노마드 족(族)’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잡노마드(jobnomad)’란 직업을 뜻하는 job과 유목민을 뜻하는 nomad가 결합된 신조어로, 직업을 따라 유랑하는 현대판 유목민을 가리킨다.

한 취업 전문 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요즘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한 직장 한 업종에 정착하지 못하고 욕구에 따라 직장업종을 자주 바꾸는 ‘잡노마드 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노마드 족’의 특징은 ‘내가 나를 고용한다!’이다. 그러니

가 어디서 일하느냐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에 취업에 필요한 강의를 들으러 이곳저곳 유랑하는 취업 유목민들도 ‘잡노마드 족’에 속한다. 잡노마드 족들이 물리는 강의는 주로 토익, 취업 강좌, 경영학 이 세 가지라고 한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직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지난 세대의 직업관이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 우물을 판다.